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희승·김정호·김준혁

주철현 · 김윤덕 · 박민규

민병덕 · 임광현 · 민형배

위성락 • 이광희 • 최민희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고 있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선거 과정에서 의견과 사실의 주장이 섞여 있는 후보자 간 공방은 최종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 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조차도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음.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선인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최근 법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행위나 후보자비방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음. 나아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음.

이에,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및 제251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0조 및 제2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를 "제252조부터 제2 54조까지"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를 "제248조 및 제249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 <삭 제> 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 ・放送・新聞・通信・雜誌・壁 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등 ·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 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 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 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 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 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 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 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 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

로 演說·放送·新聞·通信· 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 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 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 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 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전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 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 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 ・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 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傳・卑 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 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 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 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 니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 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삭 제>

제260조(양	·벌규정)	1	 	

의 대표자, 그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 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 •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 · 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 · 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 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 조제1항, <u>제250조부터 제254조</u> 까지, 제255조제1항 · 제2항, 같 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 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第273條(裁定申請) ① 제230조부 第273條(裁定申請) ①

제252조부터 제254조
<u>까지</u>
② (현행과 같음)
É 273條(裁定由語) ①

② ~ ④ (생 략)

제248조 및 제249
<u>조</u>
② ~ ④ (현행과 같음)